#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828

발의연월일: 2024. 11. 25.

발 의 자:김위상·강대식·김소희

임이자 · 김성원 · 김형동

우재준 · 김선교 · 김승수

신동욱 • 김예지 • 박정하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법률 제18751호, 2022. 1. 11. 공포, 2022. 4. 12. 시행)으로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고(법 제62조의3), 종전 제62조의3이 제62조의4로 이동함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48호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수사권한을 행사할 직무의 범위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8호).

법률 제 호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8호 중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62조의3"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62조의3 및 제62조의4제1호에 규정된 범죄 및 이와 관련되는 제62조의6"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4조와 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직			
무범위와 수사 관할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			
1. ~ 47. (생 략)	1. ~ 47. (현행과 같음)		
48. 제5조제51호에 규정된 사	48		
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			
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고			
용보험법」 제116조제1항 및			
제2항제2호에 규정된 범죄			
및 이와 관련되는 제117조에			
규정된 범죄, <u>「국민 평생 직</u>	<u></u> 「국민 평생 직		
업능력 개발법」 제62조의3	업능력 개발법」 제62조의3		
에 규정된 범죄	및 제62조의4제1호에 규정된		
	범죄 및 이와 관련되는 제62		
	<u>조의6</u>		
49. • 50. (생 략)	49. • 50. (현행과 같음)		